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73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허 영 · 권철승 · 김성희
김영환 · 맹성규 · 문진석
박범계 · 박상혁 · 박 정
박홍배 · 백혜련 · 서삼석
소병훈 · 손명수 · 안태준
이건태 · 이인영 · 이해식
조인철 · 홍기원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

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19혁명”을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4·19혁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